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권을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간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해당 없음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제1조(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9의 50번지, 39의 51번지, 39의 53번지부터 39의 56번지까지, 40의 210번지, 40의 212번지부터 40의 221번지까지, 40의 225번지, 40의 232번지, 40의 239번지, 40의 241번지부터 243번지까지, 40의 245번지, 57의 15번지, 77의 13번지, 77의 14번지, 77의 19번지, 77의 20번지, 81번지, 81의 1번지, 84의 15번지, 84의 42번지부터 84의 44번지까지, 91의 9번지, 91의 12번지, 92의 14번지부터 92의 16번지까지, 92의 51번지, 92의 53번지, 92의 58번지부터 92의 60번지까지, 117의 5번지부터 117의 7번지까지, 117의 10번지, 117의 11번지, 117의 15번지부터 117의 17번지까지, 117의 19번지부터 117의 21번지까지, 121의 27번지부터 121의 35번지까지, 121의 59번지부터 121의 64번지까지, 121의 69번지, 121의 71번지부터 121의 75번지까지, 122의 5번지, 122의 6번지, 122의 8번지, 123의 1번지, 123의 15번지부터 123의 17번지까지, 124의 1번지부터 124의 16번지까지, 126의 1번지부터 126의 12번지까지, 128의 1번지부터 128의 11번지까지, 132의 1번지부터 132의 12번지까지, 133번지, 133의 1번지, 133의 2번지, 135번지, 142의 3번지, 143의 2번지, 143의 3번지, 143의 8번지부터 143의 12번지까지, 144의 1번지부터 144의 3번지까지, 145번지, 145의 1번지, 145의 2번지, 146의 4번지, 146의 6번지부터 146의

14번지까지, 146의 16번지부터 146의 23번지까지, 206의 5번지, 206의 6번지, 206의 9번지, 207의 2번지, 207의 4번지부터 207의 12번지까지, 208의 1번지부터 208의 6번지까지, 209의 2번지, 209의 3번지, 209의 5번지, 210의 2번지, 211의 4번지부터 211의 12번지까지, 214의 2번지부터 214의 6번지까지, 215번지, 215의 1번지, 215의 2번지, 215의 6번지부터 215의 14번지까지, 215의 20번지, 215의 23번지부터 215의 31번지까지, 216번지, 216의 1번지부터 216의 9번지까지, 217번지, 217의 1번지부터 217의 3번지까지, 217의 18번지, 217의 20번지, 217의 22번지, 217의 23번지, 217의 27번지부터 217의 33번지까지, 219번지, 219의 1번지부터 219의 8번지까지, 220번지, 220의 1번지부터 220의 19번지까지, 234의 2번지, 234의 18번지, 234의 32번지, 234의 51번지, 234의 52번지, 234의 60번지부터 234의 64번지까지, 669의 2번지, 669의 3번지, 670의 2번지, 670의 4번지, 670의 6번지, 670의 8번지, 670의 10번지, 671번지, 671의 2번지부터 671의 8번지까지, 672의 2번지, 672의 3번지, 672의 18번지, 672의 25번지부터 672의 28번지까지, 672의 30번지, 672의 31번지, 672의 34번지, 672의 35번지, 672의 37번지, 672의 40번지부터 672의 53번지까지, 675의 4번지, 675의 6번지, 675의 8번지, 675의 9번지, 675의 11번지, 676의 18번지부터 676의 20번지까지, 676의 29번지부터 676의 33번지까지, 676의 35번지부터 676의 39번지까지, 677의 7번지, 677의 104번지부터 677의 110번지까지를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제2조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1의 1번지부터 1의 7번지까지, 1의 9번지, 1의 10번지, 2의 1번지, 2의 3번지, 2의 4번지, 3의 1번지, 3의 3번지부터 3의 22번지까지, 4의 1번지, 6의 2번지, 11의 2번지, 11의 5번지부터 11의 9번지까지, 13의 1번지, 13의 2번지, 13의 5번지부터 13의 13번지까지, 13의 19번지부터 13의 23번지까지, 13의 31번지, 23의 10번지, 24의 3번지부터 24의 9번지까지, 25의 1번지부터 25의 60번지까지, 26의 4번지, 26의 7번지, 26의 8번지, 30의 12번지부터 30의 16번지까지, 30의 18번지부터 30의 23번지까지, 30의 28번지부터 30의 42번지까지, 32번지, 32의 1번지부터 32의 3번지까지, 33의 1번지부터 33의 25번지까지, 34번지, 34의 1번지, 37의 1번지, 37의 5번지, 37의 6번지, 38의 1번지부터 38의 16번지까지, 38의 22번지부터 38의 39번지까지, 38의 42번지, 38의 62번지, 42번지, 42의 1번지부터 42의 5번지까지, 43번지, 43의 1번지부터 43의 3번지까지, 44의 1번지부터 44의 16번지까지, 44의 24번지부터 44의 39번지까지, 44의 44번지부터 44의 83번지까지, 44의 92번지부터 44의 99번지까지, 537의 1번지, 537의 7번지, 537의 9번지부터 537의 13번지까지, 538의 1번지, 538의 2번지, 604번지, 604의 1번지부터 604의 12번지까지, 605번지, 605의 1번지부터 605의 10번지까지, 606번지, 606의 1번지부터 606의 5번지까지, 607번지, 607의 1번지부터 607의 7번지까지, 608번지, 608의 1번지, 608의 2번지, 609번지, 609의 1번지부터 609의 6번지까지, 610번지, 610의 1번지, 611번지, 612번지, 612의 1번지부터 612의 4번지까지, 613번지, 614번지, 615번지, 615의 1번지, 615의 2번지, 616번지, 617번지, 617의 1번지

부터 617의 3번지까지, 618번지, 618의 1번지부터 618의 3번지까지, 619번지, 619의 1번지, 619의 2번지, 620번지를 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市)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시 지역은 변경되기 전 시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치분권지원과	
연 락 처	044-205-3328